

조선전기 조일간의 교역품을 통하여 본
복식문화(Ⅱ)
-조선에서의 수출품을 중심으로-

이 자 연

신라대학교 IT·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Costume Culture in View of the Trading Goods Between Chosun and
Japa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 Focused on the Exporting Goods of Chosun -

Ja-Yeon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illa University
(2003. 4. 28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hanging trends in the trading goods and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early Chosun dynasty and to find out the influence that the export goods had on the Chosun society. This research demonstrated the costume culture of the early Chosun was affected by the trading trends.

The export items of Chosun showed differences in chronological order. They changed from hemp cloth to cotton cloth. The cause of such change in the export items was due to the change in the amount of demand and supply, to products of Chosun, and to social factors.

Looking at the amount and items of the export goods to Japan, the amount was huge and the number of trade was a lot. There were several influences that the exporting cotton cloth to Japan had on Chosun's costume culture. First, the export caused the growth of cotton industry through the reinforcement policy. Next, it made the amount of national deposit of cotton cloth exhausted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he exporting cotton. It also made worse the dual distribution structure of cotton cloth and the leaning toward bad cotton cloth. And in consequence of the connection between rich merchants and politicians, these social phenomena became worse and worse. And these facts demonstrate that the costume culture of the early Chosun dynasty was affected by the trade between Chosun and Japan. Therefore, to better understand the costume culture of the early Chosun dynasty, I propose to consider the consequences resulted from the trade with Japan.

Key words: costume culture(복식문화), exporting goods(수출품), social phenomena(사회현상),
trading goods(교역품).

I. 序 言

조선시대 전기 대일관계는 왜구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교섭에서 출발하여, 점차 통상의교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양국간의 교류는 정치 문화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기 15,16세기에 있어서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신간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두 나라간의 교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으로 인하여 야기된 조선사회의 영향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조선사회의 복식문화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조일사신 간의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던 조선전기의 대일관계와 개항, 그리고 사신과의 교류에 관하여 살펴본다. 둘째, 조일간의 교역품과 그 특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히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을 중심으로 교역품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품목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거래내역에 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향을 조선사회의 복식문화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교역품의 조선사회 내에서의 위상에 관하여도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과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사료 등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고찰한다.

II. 조일외교의 전개와 교역품

1. 조일관계의 전개와 사신의 교류

조선에서는 건국 초부터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외교방향을 선린외교로 세워 고려 때부터의 국난이었던 왜구의 단속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수호를 위한 교섭의 길을 터놓고 있었다. 즉, 조선은 태조 즉위 직후인, 1392년 11월 覺鑿를 일본에 파견하여 倭寇禁壓을 요청함으로써 倭寇侵入禁止와 함께 피로인의 송환을 약속 받는 등 이때부터 일본과 교섭하게 되었다¹⁾. 朝鮮이 취한 정책은 왜구금압을 위하여

일본을 통일국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懷柔시키기 위한 懷柔政策으로서 交隣外交에 주력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일본국왕의 명의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를 엄히 다스릴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조선은 報聘使를 보내어 회답을 하는 등, 양국간의 交隣外交는 결국 조일간의 通商外交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 막부의 사행, 영주의 사행, 對馬島의 사신, 도민, 왜상 등 주로 장사를 목적으로 한 내왕이 빈번하여짐에 따라, 태종 7년에 부산포와 내이포를 최초로 개항하였으며, 同王 18년에는 새로이 염포와 가배랑의 두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4개처를 개항하였다²⁾. 그러나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으로 世宗 元年(1419)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자³⁾, 4개의 포는 폐쇄되었고, 世宗 4년(1422) 9월 대마도주 宗貞盛의 귀순을 계기로, 世宗 5년(1423) 4월에 부산포와 내이포가 개항되었다⁴⁾. 여기에, 世宗 8년(1426) 정월에 염포가 개항됨으로서 내이포, 부산포, 염포의 삼포가 조일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⁵⁾.

이렇듯,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확립된 후, 조선과 일본이 친분을 교류하면서 일본에 조선의 사절을 파견한 것은 1398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13회,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이르고 있으며⁶⁾,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사신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에 온 왜선의 출입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三浦로 출입한 막부장군의 國王使船과 호족의 巨筒船, 對馬島船, 受職人船, 受圖書人船, 歲遣船 등을 포함한 各級船의 총 숫자는 약 204船 내지 218船에 이르는 것으로⁷⁾ 추정되고 있다. 朝鮮에 온 倭人數를 보면, 사행단의 규모나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世宗 6년(1424)의 國王使行의 경우를 보면, 송선 16척에 523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왔으며⁸⁾, 巨筒使의 경우도 많은 인원이 내왕하였다. 물론 배의 규모에 따라 탑승인원도 달랐겠지만 世宗 21년(1439)에 입국자 인원 규제법에 의하면, 大船은 40명, 中船은 30명, 小船은 20명으로 정원을 정했으며, 한해 도해한 일본인의 수는 5500명 내지 6000명에 달한다⁹⁾고 한다. 이러한 추정은 世祖 元年(1455) 한 해에만 조선에 온 日本使臣의 數가 9116명이었다¹⁰⁾는 사실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

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내왕한 사신의 수를 합하면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成宗 11년(1479)부터 宣祖 21년(1588)까지의 약100여년 간 朝鮮에 건너온 日本의 使臣은 총 1634회에 달하며, 그 중 日本國王使의 派遣은 31차례에 이른다¹¹⁾.

이러한 양국사신들에 의한 왕래는 당시 日本國王은 明의 冊封을 받고 있었으므로 朝鮮의 王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으나, 諸巨使나 諸使는 日本國王과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교류가 행하여졌다¹²⁾. 이것은 對日 交易에 있어서도 조선과 日本國王使와의 交易, 그리고 日本의 여러 豪族들과의 교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일 교역과 교역품의 특성

조선전기의 朝·日 관계에서 양국사신들에 의한 교역품을 살펴보면¹³⁾, 우선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주요 품목은 染料, 香料를 비롯하여 銀, 銅, 藥材類, 硫黃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유입되는 物資 중 蘇木과 胡椒 등의 南海産物品은 동남아시아 원산의 것들로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의 仲介商을 일본이 하였고, 이것을 조선으로 다시 수출하였다. 朝鮮에서 일본으로 보낸 交易品은 苧布, 麻布, 紬布 등의 織物類와 服飾類를 비롯하여 毛皮, 大藏經, 書籍, 工藝品과 같은 물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교역은 조선에서 일본에 求請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일본측의 覬請이 대부분이었다¹⁴⁾. 교역품목의 특징을 비교하여 볼 때 대일 수출품은 주로 직물류나 대장경, 서적 등의 가공상품이었고, 수입품은 주로 광산물, 염료, 약재와 같은 원료품이었다.

Ⅲ. 조·일 간의 교역품과 조선사회의 복식문화

1.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목의 변화 양상

본 장에서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목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일무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선에서 수출한 교역품을 주요지표로 삼았을 경우, 대략 조선건국 초부터 1469년까지, 1470년부터 16세기 말까지 두 시기로 나누었다. <표 2><표 3><표 4>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공무역에 의한 자료로, 15,16세기에 있어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면포와 기타 직물의 거래량을 나타낸 것이며, 지면관계상 제1기에 해당되는 연대의 모델로서 15세기 전기를, 제2기의 모델로서 15세기 말기와 16세기 초·중기를 제시한다.

<표 2><표 3><표 4>에 의하면 제1기의 주요 수출품은 마포였으며, 제2기에는 면포가 주요 수출품이었다. 즉, 조선 전기 주요 수출품목은 마포→면포의 순으로 변화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목

<표 1> 1기-15세기 초기 직물거래량

년 도	면포 및 기타 직물거래량(匹)
세종원년(1419)	면포1,539, 마포85, 면주·저포105
세종1년(1420)	면포422, 마포38, 면주90
세종2년(1421)	면포3,160, 마포160, 면주10
세종3년(1422)	면포4264, 마포70
세종4년(1423)	
세종5년(1424)	면포3,325, 마포23,306, 면주150
세종6년(1425)	마포5,560, 면포130, 면주·저포35
세종7년(1426)	마포4,057
세종8년(1427)	마포1,999, 면포5, 면주·저포80
세종9년(1428)	마포748, 면포30, 면주·저포40
세종10년(1429)	마포5,008, 면포20, 면주·저포2,995
합 계	마포41,031, 면포12,765, 면주·저포3,505

<표 2> 2기-15세기 말기 직물거래량

년 도	면포 및 기타 직물거래량(匹)
성종1년(1470)	면포4,000, 마포1,000, 기타20
성종2년(1471)	면포3,000, 면주1,000
성종3년(1472)	면포100, 마포200
성종5년(1474)	면포700, 마포700
성종6년(1475)	면포27,208
성종7년(1476)	면포37421, 면주1,000, 마포42
성종8년(1477)	면포400, 면주200
성종10년(1479)	면포200, 면주100, 기타20
성종11년(1480)	면포404, 마포404, 기타30
성종12년(1483)	면포300, 마포300, 면주200
성종13년(1484)	면포3,507, 마포400, 면주1,726
합 계	면포76,230, 마포3,046, 면주4,226, 기타(흑마포·저포등)70

<표 3> 3기-16세기초 · 증기 직물거래량

년 도	면포 및 기타 직물거래량(匹)
연산6년(1500)	면포43000
연산8년(1502)	
중종1년(1506)	면주200
중종18년(1523)	면포100000
중종20년(1525)	면포85000, 마포7732
중종23년(1528)	면포81500
중종24년(1529)	면포60000
중종37년(1542)	면포50000
중종39 (1544)	면포65000
명종8년(1553)	면포15000
명종12년(1557)	면포25000
합 계	면포924500, 마포7731, 면주200

은 소목→동,은의 순으로 품목이 변화되어¹⁵⁾, 마포 대 소목의 교역, 면포 대 동,은의 교역으로 교역품목들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외국과의 무역은 대체로 상호간에 타국의 재화를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지며, 그 재화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물과 수요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은 조선과 풍토가 유사한 점이 많고, 수출할 적당한 농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부터 소목과 같은 남해물산을 증개하게 되었고, 또한 일본국내에서 다량 산출되는 은, 동과 같은 광산물을 주요한 교역품으로 수출하는 대신, 일본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되지 않으나, 그 수요가 많았던 면포를 조선에서 다량 수입하게 되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 조선에서도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면포사여 요청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그 생산량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면포가 조선전기 대일 교역에서 주요 수출품이자 대용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복식용품의 재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교역품은 당시의 복식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 장에서는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면포가 어느 정도의 양이었으며 그 교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면포의 교역과 거래량

전술한 <표 2><표 3><표 4>에 의거하여 조선조전기 직물류의 교역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定宗 元年(1399)에는 일본 大將軍 足利義滿使가 조선에 와서

綾 100필과 紗·羅 각 50匹을 바친 사실이 있는데¹⁶⁾, 당시 조선에서는 綿紬와 苧麻布로서 回賜하였으며, 1회 거래량은 10필 미만이었다¹⁷⁾고 한다. 世宗 朝에 와서는 朝·日貿易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무역의 양과 질에서 그리고 교역품의 종류에서도 변화가 있어, 倭物의 수입과 직물 교역량도 증가하였는데, 15세기 초기인 세종 즉위년(1418)부터 世宗 10년까지의 경우, 世宗 5년에는 綿布 3,325필, 麻布가 23,306필 綿紬가 150필에 달하는 등 마포의 거래량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世宗 6년에는 綿布의 거래량은 줄어들어 綿布 130필, 綿紬와 苧布가 35필이었고, 麻布는 5,560필이 거래되었다. 同王 7년의 경우에는 면포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마포가 4,057필이었고, 同王 8년에는 면포 5필, 저포와 면주가 80필 마포가 1,999필이었다. 즉, 수출품으로서의 면포의 경우, 世宗 5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대신 麻布의 거래량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포에서 마포로 교역품목이 바뀌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對日 回賜品으로 면포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면포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世宗 5년 2월에 綿布支出抑制策을 제정함으로써 인하여¹⁸⁾ 면포의 거래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濟用監에서 비축하고 있는 綿布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戶曹에서 倭客人의 回賜品으로 5, 6승 麻布를 사용하자고 청하여, 綿布대신 麻布로서 충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世宗 21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사신의 숫자와 왕래 횟수 그리고 가지고 오는 交易品의 양도 급증하여, 예조판서 閔義生은 “比年以來 倭使頻數 今年使人無慮一千三百餘人 難以支待” 라 하여 근래에 日本使臣이 빈번히 도래한다는 것과 그 해 1년 동안만도 日本使臣의 수가 무려 1,300여명이나 되고, 이 당시의 日本使臣의 소지물은 2-300駄나 된다고 하였다¹⁹⁾. 또한, 世宗 後半 頃에 倭人들이 1년 동안 가지고 오는 교역품의 양은 대체로 4천여 바리나 되었는데, 世宗 29년에는 商倭 所持物을 절반 또는 3분의 1을 유보시키고도 1년에 조선에서 가지고 간 물품이 3,000駄이상이었다²⁰⁾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사신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조선에서의 回賜品도 많아져 世宗 32년 정

월에는 일본국왕사가 가지고 온 蘇木과 銅, 鐵의 댓가로 綿紬 1만필을 포소로 보냈으나 부족하였다²¹⁾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文宗, 端宗代에도 지속되다가 世祖의 즉위와 함께 더욱 심화되었는데, 실제 世祖 1년(1455) 한 해에만 내왕한 日本使臣의 數가 9116명에 달한 것을²²⁾ 보아도 조선에서의 回賜品の 규모는 막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일본 사신의 적극적인 면포 사여 요구가 있는 등, 답사물로서 면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일본사신 藤九郎이 말하기를 「銅, 鐵을 官에 납부하고 綿布를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護軍職을 제수 받았으니, 國恩이 지중한데 어찌 다 진달하지 않겠습니까」라는 기록은²³⁾ 綿布賜與에 대한 적극적인 求請의 例라 하겠다. 世祖 10년(1464)에 大內殿 사행의 銅과 鐵에 대한 대가로 綿布 542필과 麻布 1080필을 주자 그들은 正布 1080필은 필요가 없다고 받으려 하지 않고, 綿布의 賜與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⁴⁾. 그리고 文宗 元年(1451) 3월 島津貴久使臣이 조선에 와서 일본에 돌아갈 때, 回賜品으로 綿布만 2,394필을 가지고 갔으며, 端宗 元年(1453) 6월에는 琉球國王使인 道安의 進上物에 대하여 回賜品으로 紬 2,577필, 綿布 3,860필, 布 7,719필을 주었다²⁵⁾과 한다. 世祖 元年 7월에 銅을 가지고 온 藤九郎은 綿布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으며²⁶⁾, 世祖 5년 4월에 山名教豊使人은 紬布와 綿布 1,000필을 求請하였다²⁷⁾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일본으로부터의 織物의 회사품은 成宗朝에 이르러 더욱 증가하였는데, 成宗 元年 8월에 伊勢守源政親使臣등이 조선에 와서 綿紬 3,000필과 綿布 5,000필, 白苧布 1,000필을 求請하였으나, 朝廷에서는 源政親에게 綿布와 麻布 각 1000필만 회사하였다²⁸⁾. 또한 成宗 7년(1476) 11월의 戶曹啓에 의하면 成宗 6년 1년 간에 서울과 경상도에서 지급된 綿布는 27,208필이었으며, 成宗 10년대에 와서는 직물무역은 더욱 활발하였다. 宗貞國의 직물무역은 이 무렵에 와서 빈번하여져, 成宗 15년 正月에는 사신을 特遣하여 金 45挺과 銅 2鈞를 贈呈하고 綿布賜給을 요청하였으며, 同王 19년 正月에는 황금 62挺과 朱 220裹를 진상하여 綿布 6,212필과 麻布 494匹 16尺 9寸을 지급 받았다. 또한, 同王 20년 正月에도 황금 70挺과 朱紅 1,360裹를 보내어

綿布를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이 볼 때, 15세기에 와서 朝·日交易은 큰 변화를 보였는데, 왜상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들의 양이 많아지고 그 품목도 금, 은, 동, 납, 유황 등 광산물과 소목, 호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선의 답사물도 전술한 바와 같이 15세기 중엽에는 마포 대신 면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여²⁹⁾, <표 2>에서와 같이 1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5세기에 이르러 답사물로서 綿布가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은, 당시 조선내의 면포 생산량의 증가³⁰⁾와 일본사신의 적극적인 면포 사여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일본에서는 絹布, 麻布와 같은 織物類는 일본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었으나³¹⁾, 木棉은 아직 생산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직물이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국내경제의 성장과 함께 무사층이나 상인층을 중심으로 의복 등에 면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면포의 수요가 확대되었다³²⁾.

한편, <표 4>과 같이 16세기에 들어와 일본사신들이 가지고 오는 동과 소목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 연산군 6년(1500)에는 대마도주가 한 번에 동 11만근을 보내어 공무역하기를 청하는 등³³⁾, 무역의 규모가 훨씬 커졌으며, 이에 따라 한번에 지급되는 면포 양만 하여도 4만 3천여필이 지급될 정도였다³⁴⁾. 특히, 이 시기에는 연산군의 즉위와 함께 왕실의 사치와 무절제한 국고 지출이 늘어나 朝·日 貿易은 양과 질에 있어 큰 변화를 보였다. 1505년(연산군 11)과 1506년 두 해 동안에 부상대고가 소유한 진주, 동, 금 등을 집중 구입하였는데, 정부가 부상대고들에게 사치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면포는 179,813필이었으며, 마포가 10,609필 그리고 米穀이 22,166석이나 되었다³⁵⁾.

朝·日貿易은 中宗 20년(1525)경을 전후하여 큰 변화가 있었는데, 倭使들이 가져오는 商物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늘어났고, 조선 정부의 무역 규제가 보다 강화되자 무역의 형태는 공무역 중심에서 사무역·밀무역으로 옮겨갔다. 中宗 18년(1523)에 일본 국왕사가 무역한 면포의 양이 10만 필에 달하였고³⁶⁾, 다음해에는 大內殿의 사신이 많은 상물을 가져왔으며³⁷⁾, 그리고 中宗 20년(1525)에는 국왕사 등이 가져온 호초 등 상물의 가격이 8만

5천 필에³⁸⁾ 달할 정도였다. 또한 中宗 23년(1528)에는 일본국왕사가 잇달아 내왕하여 공무역한 수량만도 면포 8만 1천 5백필에 이르렀고, 사무역한 수량은 공무역의 배나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⁹⁾. 中宗 35년(1540)경에 들어와서는 대일교역품이 기존의 소목, 동에서 온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중종 37년(1542)에는 일본 국왕사 安心東堂이 은 8만냥과 유황 20만 근을 가지고 왔으며⁴⁰⁾, 이듬해에도 일본국왕사가 많은 양의 은과 소목 등을 가지고 와서⁴¹⁾, 공무역한 수량이 면포 약 6만 5천 필에 달하였다. 이 무렵에 일본인들이 공무역에 의하여 한 해 동안 가지고 가는 면포만도 선박으로 6,70隻分이나 달하였다⁴²⁾.

이렇듯 16세기 초, 중엽까지 일본 사신들이 가져오는 교역품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그 품목에서도 은이 추가되는 등 다소의 변화가 있었고, 조선으로부터의 답사물도 면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5, 16세기에 전개되었던 조일간의 교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의 거래량과 거래내역을 통하여 보았을 때, 그 양은 막대한 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교역조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취하였으며, 또한 다량의 면포를 국외에 수출함으로써 인하여 파생된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다음 장에서는 조선사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면포의 수출과 조선사회에의 영향

1) 면업의 장려와 발전

전술의 면포 교역내역에서와 같이 조일교역을 통하여 다량의 면포가 일본으로 수출됨에 따라 조선 국내에서는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한 강구책을 도모하였다. 즉, 15세기 중반부터 정부주도 하에 면화생산의 장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⁴³⁾, 15세기 말기에는 남녀귀천할 것 없이 모두 면포를 입게 되었다는 기록⁴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포가 다량 생산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면화생산의 장려책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世祖는 백성이 곡물생산에만 주력을 하고, 면화 재배에는 무관심한 잘못을 지적하고, 면화의 재배를 적극 권장

하도록 지방관에게 명하였다는 기록⁴⁵⁾이 있다. 또한 면화씨를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 보내어 심게 한 후 이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후 조건상 면화재배가 어려운 북부지방까지도 면화재배를 시도⁴⁶⁾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장려책의 결과, 그 폐단도 있어,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水田을 매워 면화를 심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서 당시 전라도 지방에서는 문제가 되었다⁴⁷⁾고 한다. 이러한 면화의 장려책으로 인하여 생산된 다량의 면포는, 당시 서민들의 의복 제작에 널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⁴⁸⁾, 백성들의 조세납부용, 관리들의 녹봉으로도 사용이 되었다⁴⁹⁾. 특히, <표 2><표 3><표 4>에서와 같이 15세기이후부터는 조일교역에 있어 주요한 교역품으로서 교환경제의 발전에 따른 대용화폐로의 기능으로도 작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포장려책에 의한 면업의 발전은 면포수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일본인들에 의한 면포수요는 이러한 면업의 발전을 더욱 조장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고고갈현상과 사무역의 허용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綿布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 국내에서의 면포조달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당시 대용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면포의 수출이 많아지면서 국고부족을 가져오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해의 공물을 미리 징수하거나⁵⁰⁾, 면포의 주 수입원이었던 노비 신공을 한 사람마다 한 필씩 더 징수하거나⁵¹⁾ 또는 田結에다 면포를 부과하는 등 징포책⁵²⁾을 강화하였다. 그 예로 綿布의 輸出이 극한에 달하였던 成宗 16년 10월의 경우를 보면, 司贍寺가 가지고 있는 노비신공 綿布는 724,500필이었고, 麻布는 18만 여필이었으며, 17년경에는 倭人 回奉이 年 50만 필 이상이었다⁵³⁾고 한다. 당시에는 倭人에게 지급하는 綿布의 양이 상당하였으므로, 국고보유의 綿納나 麻布는 거의 고갈되고 綿布만 조금 남아 있을 정도로⁵⁴⁾ 국가의 재정상 부담은 심각하였으며, 朝廷에서는 軍需나 祿俸 등으로 지급되는 織物의 부족으로 자주 논란이 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補完策

의 하나로 成宗 16년에 私貿易을 허가하였고⁵⁵⁾, 同王 25년에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이윤을 보장하였던 私獻貿易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⁵⁶⁾. 또한 교역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고, 왜인에게 綿布로만 답사하기가 어렵게 되어 成宗 23년(1492)부터는 綿布와 麻布, 綿紬 세 가지로 나누어 답사하도록 하는⁵⁷⁾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3) 면포유통의 이중화 현상과 악포화 현상

한편, 이러한 朝·日交易에 있어 면포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대용화폐로서의 면포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의 국고보유량은 고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즉, 소농층에 대한 징포책을 강화하여 부족한 면포를 충당하기로 하였던 것이다⁵⁸⁾. 당시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여 공물로 징수하였던 면포는 5승, 35척이 기준이었으나⁵⁹⁾, 이 규정의 면포는 그 자체가 직조에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고가의 화폐였기 때문에 민간의 소액거래에는 적합하지 못하였다⁶⁰⁾. 그 결과 조세납부용이나 朝·日貿易에는 5승 35척 이상의 질이 좋은 良布가 사용되었으며, 민간에서의 소액거래 시에는 4승 35척 미만의 惡布가 유통⁶¹⁾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良布인 5,6升布를 回奉이라 하였고, 민간에서 사용하였던 惡布를 常布라고 하였던 것⁶²⁾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포를 回奉과 常布라고 불리었던 것으로 보아서도 면포의 이중유통현상이 실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악포화 현상의 정도는 극심하여 명종대에는 면포의 질은 물론, 면포 1필의 길이가 겨우 10尺에 지나지 않고, 또한, 반폭을 쪼개어 1필로 만든 것도 시중에 유통되는 실정이었다⁶³⁾. 정부에서는 이러한 면포의 악포화 현상에 대하여 惡布를 짜는 자와 2升, 3升의 바디를 만드는 자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벌을 가한다는 여러 차례의 금령을 반포⁶⁴⁾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금지책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듯, 전술한 바와 같이 명종 대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4) 부상대고의 출현과 물가등귀

위와 같은 면포의 惡布化 경향은 16세기 초기에

와서 더욱 심하였는데, 특히 이 시기의 지나친 사치 성향은⁶⁵⁾ 면포의 고갈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고, 이로 인한 민간에서의 惡布의 유통은 당시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상승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의 사무역의 허가는 富商大賈의 활약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로 발전하게 되었다. 부상대고란 庶人, 賤人出身의 사무역을 수행하는 상인세력으로, 이들이 사무역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치품 무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 때문이었다. 즉, 부상대고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2~5배나 되는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삼포주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왜상들과 밀착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⁶⁾. 한편, 이들 부상대고들의 사무역 성행으로 국가기밀 유출에 의한 국익의 훼손, 사치풍조와 물가등귀, 생산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⁶⁷⁾. 따라서 정부는 밀무역에 대한 엄격한 금령을 반포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는 부상대고들이 중개무역을 통하여 또는 국내 물가등귀에 따른 가격구조를 통하여도 많은 이윤을 남기는 자본축척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고위관료층과 혈연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⁶⁸⁾ 이러한 현상들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더욱 극심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IV. 結 言

本 研究는 朝鮮 전기 조일간의 교역품 중,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수출품을 중심으로 교역품목의 변화양상과 그 원인, 그리고 수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조선사회에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조선전기의 복식문화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물품은 주로 남해산물품인 소목과 향료 등 원료에 해당하는 물품인 반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물품은 주로 직물, 서적, 대장경 등 문화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에서 수출한 교역품은 시기에 따라 품목이 변화되었으며, 그 변화양상은 마포→면포의 순으로 변

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품목변화의 원인은 교역국 간의 수요·공급량의 변동, 조선의 생산물과 사회적 인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의 거래량과 거래 내역을 통하여 보았을 때, 그 양은 막대한 양이었으며, 교역횟수도 많았다. 다량의 면포를 일본으로 보냄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향을 복식문화적인 면과 결부시켜 고찰하여 보았을 때, 면화생산의 장려책으로 인하여 면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 면포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대용화페로서의 면포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의 국고보유량은 고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국고보유량의 고갈상태로 인하여 면포의 이중유통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면포의 惡布化 경향이 심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의 지나친 사치성향은 면포의 고갈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고, 이로 인한 민간에서의 惡布의 유통은 당시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상승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부상대고들과 고위관료층이 혈연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착관계에 놓이게 되는 정경유착현상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더욱 극심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 전기의 복식문화적인 제 현상은 조일양국간에 이루어진 교류에 의해서도 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전기의 복식문화를 구명하기 위하여는 당시의 조일교역을 통하여 발생한 영향의 일면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이어 금후의 연구에서 조선 중후기의 조일교역 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 현황에 대한 복식사적인 연구에 관하여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金柄夏 (1969).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 宣-印刷社.
- 2) 太宗實錄. 卷35, 18年 3月 壬子條.
- 3) 世宗實錄. 卷5, 元年 9月 壬戌條.
- 4) 世宗實錄. 卷17, 4年 9月 丙寅條.
- 5) 世宗實錄. 卷22, 5年 10月 壬申條.
- 6) 下蒲刈町. 安藝蒲刈御馳走一番. 下蒲刈町出版局. 1989. p. 59.
- 7) 李鉉淙 (1964). 朝鮮前期 對日 交渉史研究. 韓國研究院. pp. 66-67.
- 8)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 8月 丁未條.
- 9) 世宗實錄. 卷85, 世宗 21年 5月 辛酉條.
- 10)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己酉條.
- 11) 한문중 (1996).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0-12.
- 12) 孫承詰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p. 16.
- 13) 小野兎嗣 (1941). 日本産業發達史の研究. 至文堂. pp. 293-294.
- 14) 典客司 (1992). 倭人來請登錄. 卷2. 서울대奎章閣.
- 15) 中宗實錄. 卷98, 中宗37年 4月 庚午條.
- 16) 定宗實錄. 卷1. 定宗1年 6월 乙酉條.
- 17) 太宗 16年 7月 21日에 對馬島 宗貞茂에게 回賜한 綿紬와 苧布 50필은 많이 지급된 예이다.
- 18)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 12月 乙丑條.
- 19) 世宗實錄. 卷98, 世宗24年 11月 甲戌條.
- 20) 世宗實錄. 卷118, 世宗29年 11月 乙酉條.
- 21) 世宗實錄. 卷127, 世宗32年 閏正月 庚申條.
- 22)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己酉條.
- 23) 世祖實錄. 卷1, 世祖 1年 7月 丁酉條.
- 24) 世祖實錄. 卷34, 世祖10年 9月 丁丑條.
- 25) 端宗實錄. 卷5, 端宗元年 6月 庚子條.
- 26) 世祖實錄. 卷1, 世祖 1年 7月 丁酉條.
- 27) 世祖實錄. 卷1, 世祖1年 7月 丁酉條. 『世祖實錄』卷16. 世祖5年 4月 戊辰條.
- 28) 成宗實錄. 卷7, 元年 9月 己巳 乙丑條.
- 29) 李正守 (1998). 15.16세기의 대일무역과 경제변동. 부대사학. 22, p. 13.
- 30) 世宗實錄. 卷118, 世宗29年 11月 乙酉條.
- 31) 金柄夏. 前掲書. p. 47.
- 32) 1467년 應仁의 亂 이후 보다 양질의 면포가 수입됨에 따라 점차 京都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도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 33) 燕山君日記. 卷38, 燕山君6年 8月 甲午條. 乙未條.
- 34)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4年 6月 丙子條.
- 35) 燕山君日記. 卷59, 燕山君 11年 9月. 『燕山君日記』卷61. 燕山君 12年.
- 36) 中宗實錄. 卷48, 中宗18年 7月 甲午條.
- 37) 中宗實錄. 卷52, 中宗19年 11月 辛巳條.
- 38) 中宗實錄. 卷55, 中宗20年 8月 乙巳條.
- 39) 中宗實錄. 卷62, 中宗23年 8月 壬戌條.
- 40) 中宗實錄. 卷98, 中宗37年 4月 庚午條.
- 41) 中宗實錄. 卷100, 中宗38年 3月 丙寅條.
- 42) 中宗實錄. 卷102, 中宗39年 4月 壬辰條.
- 43) 世宗實錄. 卷69, 世宗17年 9月 庚辰條. 世宗實錄. 卷71. 世宗18年 1月 壬申條.
- 44) 世祖實錄. 卷3, 世祖 2年 3月 丁酉條.

- 45) 世祖實錄. 卷6, 世祖3年 1月 甲戌條.
- 46) 成宗實錄. 卷54, 成宗6年 4月 乙巳條.
- 47) 中宗實錄. 卷17, 中宗7年 10月 辛丑條.
- 48) 遠藤元男 (1975). 織物の日本史. 日本放送出版協會, p. 94.
- 49) 燕山君日記. 卷55, 燕山君10年 8月 壬申條.
- 50) 燕山君日記. 卷55, 燕山君10年 8月 壬申條.
- 51) 燕山君日記. 卷59, 燕山君11年 9月 辛亥條.
- 52) 燕山君日記. 卷62, 燕山君12年 6月 丙子條.
- 53) 成宗實錄. 卷217, 成宗19年 6月 丁未條.
- 54) 成宗實錄. 卷289, 成宗25年 4月 癸亥條.
- 55) 成宗實錄. 卷289, 成宗25年 4月 乙丑條.
- 56) 成宗實錄. 卷288, 成宗25年 3月 己酉 辛亥條.
- 57) 成宗實錄. 卷261, 成宗23年 1月 癸未條.
- 58) 燕山君日記. 卷55, 燕山君10年 8月 壬申條.
- 59) 成宗實錄. 卷139, 成宗13年 3月 壬申條.
- 60) 明宗實錄. 卷12, 明宗6年 9月 甲午條. 당시, 민간의 소액거래 시에는 곡식으로 교환하였다.
- 61) 成宗實錄. 卷236, 成宗21年 1月 己巳條. 『成宗實錄』卷238, 成宗21年 3月 乙丑條.
- 62) 明宗實錄. 卷12, 明宗6年 9月 甲午條.
- 63) 李正守, 前掲書, 34.
- 64) 中宗實錄. 卷49, 中宗18年 11月 己卯條.
- 65) 中宗實錄. 中宗 11年 5月 己酉條.
- 66) 中宗實錄. 卷8, 中宗4年 3月 丙辰條.
- 67) 李正守, 前掲書, 44.
- 68) 成宗實錄. 卷279, 成宗24年 6月 乙亥條.